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98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 : 김영주·강병원·김경만

김경협 · 김승원 · 송재호

유정주 • 아주진비 • 조승래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 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조제3호가목의 죄 중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의 죄
- 2. 제2조제3호라목의 죄 중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의 죄
- 3. 제2조제3호바목의 죄 중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u>
	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
	항 및 제312조제2항을 적용하
	<u>지 아니한다.</u>
	1. 제2조제3호가목의 죄 중
	<u>「형법」 제260조(폭행, 존속</u>
	<u>폭행)제1항·제2항의 죄</u>
	2. 제2조제3호라목의 죄 중
	<u>「형법」 제283조(협박, 존속</u>
	<u>협박)제1항·제2항, 제286조</u>
	<u>(미수범)의 죄</u>
	3. 제2조제3호바목의 죄 중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u> 경우에는 제1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항을 적용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삭 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 제>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된-----.

<삭 제>